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(행안부, '11. 9. 30)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확대 및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의 일환으로 '13년도 사회복지직 채용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586명 → 1,591명(5명 증)
- 직종별 · 직급별 정원조정
 - 일 반 직 : 1,292명 → 1,297명(5명 증)
 - 6급이하 : 1,204명 → 1,209명(5명 증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29조 및 제30조
- 예산조치 : 2013년 예산안에 반영(총액인건비 범위내 운영)
 -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: 150,000천원 정도(국비 70%지원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(행안부, '11. 9. 30)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확대 및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의 일환으로 '13년도 사회복지직 채용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정원의 총수 : 1,586명 → 1,591명(5명 증)
- 직종별 · 직급별 정원조정
 - 일반직 : 1,292명 → 1,297명(5명 증)
 - 6급이하 : 1,204명 → 1,209명(5명 증)

○ 검토결과

- 사회복지 업무 확대 및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여,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저촉사항은 없으나, 장기적인 사회복지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